

『신도시 주차타워 조성 설계공모』 추가질의응답서

2023.12.14

| NO | 질의번호 | 질의내용   | 질의답변  |
|----|------|--|---|
| 17 | 17-1 | <p>질의회신 15-2의 답변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<br/>                     질의회신 15-3은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어렵다고 되어있으면서 현재 출입구 예 준하여 사용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.<br/>                     이는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이 현재 출입구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관련법규 중대한 과실로 연결될수 있어 재차 확실한 답변을 드립니다.</p> | <p>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하며 현재 출입구에 준하여 사용 가능함</p> |
|    | 17-2 | <p>14-4 질의회신을 보면 전고 3,000이하 소형탑차등의 진입을 고려하여 계획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전층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질의를 드립니다.</p>   | <p>소형탑차 진입 고려는 권장, 1층은 필수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|